



ISLAND OF GUAM  
OFFICE OF THE GOVERNOR  
HAGĀTÑA, GUAM 96932  
U.S.A.

**행정지시: No.2020-19**

**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개인 보호 장비 부족현상 관련**

- 2020년 3월 14일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Organic Act of Guam에 의거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괌내 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공표함.
- 현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행정지시 Nos. 2020-09, 2020-11 그리고 2020-16을 통해 세차례 연장되었음.
- 제10조 19항 4호 19403(a)(1)목에 의거, 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방해 및 지연시키는 모든 법령, 규제 및 규정이 유보됨.
-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관련 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.
- 괌 식품의약품법 제10조 40항에 의거하여 괌 내 식품, 화장품, 약품 및 의료품들은 규제되고 있음.
- 현재 마스크, 세정제, 및 소독제와 같은 개인 보호 장비 및 물품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음
-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함.
- 괌 보건 사회 복지국(이하 DPHSS)은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해 지침과 규제를 공시하고, 괌 내 해당 물품 부족에 대응 해야함.
-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Organic Act of Guam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과 같은 지시를 공표함.

**1. 코로나19 관련 물품에 대한 임시 지침 발표.**

DPHSS는 괌 관세청(이하 GCQA)에게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수입, 배급 및 판매에 대한 임시 지침 및 규제를 전달함. 해당 임시 지침은 2020년 7월 15일까지 유효함.

**2. 실행**

GCQA와 DPHSS는 관련 물품의 입품에 있어 해당 임시지침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함.



**ISLAND OF GUAM**  
**OFFICE OF THE GOVERNOR**  
HAGĀTÑA, GUAM 96932  
U.S.A.

### 3. 책임

모든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상품이 DPHSS 임시지침 정책 및 연방법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은 제조자, 수입자 및 위탁자의 책임임. 임시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물품은 관으로 들일 수 없으며, 소유주, 수입업자 또는 수취인의 비용으로 물품이 보내진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음. DPHSS 임시지침에 충족하는 기준은 연방법에 따른 소유주, 수입업자 또는 위탁자의 의무를 경감시켜서는 안됨.

### 4. 분리 가능성

만약 특정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본 행정 명령 및 조항이 무효화된다면, 무효 조항이나 적용 없이 효력이 주어질 수 있는 본 명령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. 따라서 본 명령의 조항은 분리될 수 있음.

2020년 6월 2일 관 하갓냐에서 공표

루 레온 게레로  
관 주지사